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제 주 4 · 3 사 건 진 상 규 명 및 희 생 자
명 예 회 복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4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혼인·입양 신고 등의 특례가 도입되면서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등이 가능해짐. 이에 위원회의 결정범위와 혼인·입양 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 사후양자의 요건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록·정정의 실무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결정범위 규정(안 제13조)

혼인·입양 신고 특례 도입으로 위원회의 결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청사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범위를 별표로 구체화(제1항)

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의 신청기간 신설(안 제13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의 신청기간을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2년으로 설정(제3항)

다.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방법 규정(안 제13조의2)

혼인·입양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와 첨부서류를 별표로 규정하고, 신청 시 신청인이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항, 제2항)

라. 이해관계인의 정의 신설(안 제13조의3)

이해관계인을 위원회 결정에 의해 성·본이 변경되는 사람, 부·모·배우자·자녀가 정정되는 사람 등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가 변동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제2항)

마. 소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2제7항, 제8조)

- 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의2제7항)
- 2)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사. 가족관계 작성·기록·정정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안 제13조의3)

- 1) 실무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을 받은 때 신청서 등의 보완·수정 요청,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신청사실의 통지·공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2) 신청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3항)

- 3) 실무위원회는 신청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도록 함(제4항)
- 4)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5항)
- 5) 실무위원회가 통보받은 사항을 신청인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6항)

아.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안 제13조의6)

보상금 신청기간의 종기를 현행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제1항)

자. 보증인 규정 확대(안 제13조의2)

희생자·유족 신고 시에만 소명자료로서 적용되던 보증인 규정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시에도 적용하도록 함(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제8조 중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신청사실의 통지, 공고 및 사실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사무처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에 대한 신청)”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록 또는 정정결정의 범위 및 신청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2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록 또는 정정(이하 “작성(정정)”이라 한다) 결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작성(정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1991년 1월 1일 이전에 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속 또는 친족회가 양자로 선택한 사람
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 또는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을 하지 않고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동친(同親: 촌수가 같은 사람)의 직계비속남자가 혼인 이후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1991년 1월 1일 이전에 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속 또는 친족회가 양자로 선택한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85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제13조의4부터 제13조의6까지로 하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록 또는 정정결정에 대한 신청) ①

법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 제13조의3 및 별표 2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소명하는 자료로서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이 포함된 경우에는 2명,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제적등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

2. 제주4·3사건 및 그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할 사항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제주4·3사건 및 그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할 사항

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제13조의3(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록 또는 정정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보완·수정 요청
2. 사실조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청 사실의 통지 및 2개월 간의 공고

② 법 제21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3호, 제3항 및 제6항의 이해관계인이란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가 변동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성(姓)·본(本)이 변경되는 사람
2.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록 또는 정정되는 사람
3.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변동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③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제1항제3호의 공고기간 내에 실무위원회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인의 제적등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4(중전의 제13조의2) 중 “별표”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의5(중전의 제1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13조의6(중전의 제13조의4)제1항 중 “2025년 5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7호의4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은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신고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및”으로, “초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말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을 “제1항”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위원회에”를 “실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4. 희생자의 행방불명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신청인에게 보완”을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보완”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종전의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종전의 별지 제7호의3서식) 제2호 중 “별지 제7호의4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록 또는 정정결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2024년 9월 1일 이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기록하거나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기록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범위(제13조와 관련)

신청사항	결정범위
제적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결정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	1.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결정 2.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결정[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 명의의 사후 신고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인지,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과양에 대한 무효확인결정[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 명의의 사후 신고에 한정한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결정 또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결정 2. 친생자관계존재확인결정 3. 인지결정 4.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 5.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결정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1. 사실혼관계존재확인결정 2. 혼인, 협의이혼에 대한 무효확인결정[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 명의의 사후 신고에 한정한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 양친자관계존재확인결정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결정 2. 입양, 협의과양에 대한 무효확인결정[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 명의의 사후 신고에 한정한다] 3.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

- 비고 1. 위원회는 제적부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결정할 수 없다.
2. 위원회는 허무인(虛無人), 무적자(無籍者) 또는 이중제적부가 존재하는 자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무적자(無籍者)의 경우에는 “제적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결정이 희생자의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과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적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및 양친자관계존재확인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다.
 5. 위원회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경우 친생부모의 성(性)과 본(本)을 따라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을 할 수 있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기록 또는 정정결정 신청인 및 신청서류(제13조의2와 관련)

신청사항	신청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적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가족관계등록신분표(별지 제7호의3서식) 5. 희생자의 출생, 사망사실 소명자료 6. 희생자 부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희생자와의 부모관계를 소명하는 자료(희생자의 부모를 기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보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보증서(별지 제7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희생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5.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6.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 정정할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동의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입양 등 정정될 사항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증명서) 및 정정될 사항을 소명하는 자료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사람이 신청인 또는 작성(정정) 대상자가 아닌 동의자일 경우에 한정한다] 7. 보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보증서(별지 제7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제주4·3사건 피해로 희생자와의 신분관계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람 2.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작성(정정)대상자의 친생 부모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5. 작성(정정)대상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6. 친생부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7. 정정될 부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8. 가족관계등록신분표(별지 제7호의3서식)(정정될 부모 둘 다 또는 출생신고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결정 또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보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보증서(별지 제7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1. 제주4·3사건 피해로 희생자와의 신분관계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람 2.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작성(정정)대상자의 사실혼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5. 작성(정정)대상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6.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7. 보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보증서(별지 제7호의4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 제주4·3사건 피해로 희생자와의 신분관계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람 2.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작성(정정)대상자의 양부모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5. 작성(정정)대상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6. 양부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7. 가족관계등록신분표(별지 제7호의3서식)(양부모 둘 다 또는 출생신고인과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결정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친생부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친생부모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족관계등록신분표(별지 제7호의3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보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보증서(별지 제7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② 작성 (정정) 대상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공부상 () / 실제 ()		전화번호
③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		전화번호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④ 신청 내용	신청구분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또는 정정	
	신청사항	☐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 ☐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희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희생자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작성(정정)할 사항		

⑤사건본인 명단

사 망 사 실 기 록 또 는 정 정	희생자 (친생부, 양부, 사실혼 배우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공부상 () / 실제 ()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희생자 (친생모, 양모, 사실혼 배우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공부상 () / 실제 ()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친 생 자 관 계 존 재 확 인	희생자의 친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공부상 () / 실제 ()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친생부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공부상 () / 실제 ()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생모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공부상 () / 실제 ()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공부상 () / 실제 ()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공부상 () / 실제 ()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희생자의 양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공부상 () / 실제 ()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양부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공부상 () / 실제 ()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모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공부상 () / 실제 ()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기록 또는 정정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공용발급 및 확인사항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공통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적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1. 희생자의 출생,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2. 가족관계등록신분표(별지 제7호의3서식) 3. 희생자의 부·모관계를 소명하는 자료(희생자의 부·모를 기록하는 경우)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	1. 희생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사람이 신청인 또는 작성(정정)대상자가 아닌 동의자일 경우) 3. 정정될 사항을 소명하는 자료(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1. 작성(정정)대상자의 친생부·모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2. 가족관계등록신분표(별지 제7호의3서식)(정정될 부·모 둘 다 또는 출생신고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 또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1. 작성(정정)대상자의 사실혼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	1. 작성(정정)대상자의 양부·모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2. 가족관계등록신분표(별지 제7호의3서식)(양부·모 둘 다 또는 출생신고인과의 양친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3. 작성(정정)대상자의 친생부·모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족관계등록신분표(별지 제7호의3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1. 제10조제2항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할 경우 신청인이 첨부) 3.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1. 희생자의 부·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희생자의 부·모를 기록할 경우) 2. 보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보증서(별지 제7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1.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2. 동의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입양 등 정정될 사항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3. 보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보증서(별지 제7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1. 작성(정정)대상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2. 친생부·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정정될 부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보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보증서(별지 제7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1. 작성(정정)대상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보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보증서(별지 제7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1. 작성(정정)대상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양부·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입양관계증명서(상세) 3. 친생부·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등록신분표(별지 제7호의3서식)를 제출할 경우) 4. 보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보증서(별지 제7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작성 방법

1.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각 란의 해당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 ①란, ②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④란에서 선택할 신청사항이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경우 ①란과 ②란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희생자’를 기재합니다.
 - ④란에서 선택할 신청사항이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의 경우 ①란과 ②란에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이 필요한 희생자’를 기재합니다.
 - ④란에서 선택할 신청사항이 ‘친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경우 ①란에는 ‘친생자의 친생부·모 중 희생자’를 기재하되 둘 다 희생자일 경우에는 ⑤란도 함께 기재합니다. ②란에는 ‘친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한 친생자’를 기재합니다.
 - ④란에서 선택할 신청사항이 ‘희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경우 ①란에 ‘희생자’를 기재하고 ②란에는 ‘희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한 사실혼배우자’를 기재합니다.
 - ④란에서 선택할 신청사항이 ‘희생자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경우 ①란에는 ‘양부·모 중 희생자’를 기재하되 둘 다 희생자일 경우에는 ⑤란도 함께 기재합니다. ②란에는 ‘희생자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한 양자’를 기재합니다.
3. ③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란에 ‘①란의 희생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및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란에 ‘②란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4. ④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구분의 경우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제적부는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의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선택하고, 그 외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또는 정정’을 선택합니다.
 - 부수된 신청사항이 있더라도 주된 신청사항은 1개를 선택하되 부수된 신청사항에 대하여 ⑤란도 함께 기재합니다. 주된 신청사항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정정)할 사항란’을 기재할 때에는 작성(정정)할 사항과 관련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실제 신분관계, 제주4·3사건 당시 생활실태 및 희생자의 제적부가 없는 사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기재합니다.
5. ⑤란: 주된 또는 부수된 신청사항이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사항이 존재하는 사건 본인의 목록이 ②란과 ⑤란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유의 사항

1. 희생자의 유족과 신청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실 및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결과가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적부의 기재내용은 정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적부의 기재내용의 정정을 원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에 따른 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희생자의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사항과 모순된 기재·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 제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신청사항에 대하여 불인정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신청인이 허위의 신청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 결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동의서

신청 내용	신청사항	☐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 ☐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희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희생자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작성 (정정) 대상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공부상 () / 실제 ()		
동의자 (사건 본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공부상 () / 실제 ()		
	정정할 사항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신청에 동의합니다.		
동의자(사건본인)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사건 본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공부상 () / 실제 ()			
	정정할 사항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신청에 동의합니다. 동의자(사건본인)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사건 본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공부상 () / 실제 ()			
	정정할 사항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신청에 동의합니다. 동의자(사건본인)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사건 본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공부상 () / 실제 ()			
	정정할 사항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신청에 동의합니다. 동의자(사건본인)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사건 본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전화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공부상 () / 실제 ()			
	정정할 사항			
	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신청에 동의합니다. 동의자(사건본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사실 등 정정할 사항을 소명하는 자료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날인 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공용발급	1. 동의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입양 등 정정 될 사항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	

작성방법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작성(정정)할 사항이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과 관련될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이 사건본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로 같음합니다.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희생자가 사망한 후 망인(亡人)인 희생자가 출생신고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친생자 중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제출합니다.
 - 가. 희생자인 부의 실제 사망일로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경우
 - 나. 희생자인 모의 실제 사망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경우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희생자가 사망한 후 망인(亡人)인 희생자가 신고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인지신고,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 또는 협의파양신고의 상대방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제출합니다. 다만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희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또는 '희생자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정정할 사항란'을 기재할 때에는 정정할 사항에 관한 실제 신분관계 및 제주4·3사건 당시 생활실태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기재합니다.
3. 서명 시에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날인 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보증인 서명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며, 인감도장 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유의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되어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처리할 경우 사건본인의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 등이 정정될 경우 이에 따른 후속업무는 사건본인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사건본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대면 또는 통화)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3. 동의자가 허위의 신청 동의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 결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가족관계등록신분표

< ‘제적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

1. 기본사항

①등록기준지	
--------	--

특정등록사항

구분	②성명	③출생연월일	④주민등록번호	성별	⑤본
본인	한글 / (한자)	년 월 일	-		한글 (한자)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가족관계 등록작성	⑥ 【출생장소】
사 망	⑦ 【사망일시】 【사망장소】

2. 가족관계사항

구분	성명	생존 여부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⑧부	한글 / (한자)		년 월 일	-		한글 (한자)
⑧모	한글 / (한자)		년 월 일	-		한글 (한자)

작성방법

1. ①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제10조제2항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의 ‘희생자의 당시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희생자의 부·모관계’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종전 호적의 본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지번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②란: 제10조제2항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의 ‘희생자의 성명(한자)’를 기재합니다. 희생자의 성명을 모를 경우에는 ‘성명미상, 성미상 또는 명미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③란: 제10조제2항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의 ‘희생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희생자의 생년월일을 모를 경우에는 ‘월일미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④란: 주민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둡니다.
5. ⑤란: ②란을 ‘성명 미상 또는 성 미상’으로 기재할 경우에 한하여 본란은 공란으로 기재합니다.
6. ⑥란: 희생자의 출생장소를 모를 경우에는 ‘미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7. ⑦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사망일시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의 ‘희생자의 사망일자’를 기재합니다. 희생자의 사망 일자를 모를 경우에는 ‘월일미상 또는 일자미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장소란”은 읍면동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8. ⑧란: 희생자의 부·모관계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생존여부”란에 희생자의 부·모가 생존한 경우에는 ‘생존’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1. 희생자의 부·모는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시 기록됩니다.
2. 희생자의 부·모 이외의 가족관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에 따른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이 신청만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3. 제주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시신 수습사실이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시 사망일시와 사망장소가 기록됩니다.
4. 제주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가족관계등록신분표

< 정정될 부·모, 양부·모 둘 다 또는 출생신고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결정 또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

1. 기본사항

① 등록기준지	
---------	--

특정등록사항

구분	②성명	③출생연월일	④주민등록번호	성별	⑤본
본인	한글 / (한자)	년 월 일	-		한글 (한자)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가족관계 등록창설	⑥ 【출생장소】
사 망	⑦ 【사망일시】 【사망장소】

2. 가족관계사항

구분	성명	생존 여부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⑧부	한글 / (한자)		년 월 일	-	남	한글 (한자)
⑧모	한글 / (한자)		년 월 일	-	녀	한글 (한자)
⑨ 배우자	한글 / (한자)		년 월 일	-		한글 (한자)
⑩자녀	한글 / (한자)		년 월 일	-		한글 (한자)

3. 혼인관계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혼인	⑪ 【신고일】 【배우자】 【배우자의 출생연월일】

작성방법

1. ①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기준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폐쇄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2. ②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과 관련하여 성(姓)은 본인의 친생부·모의 성(性)을 기재합니다.
 - ‘희생자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과 관련하여 본인의 친생부·모 관계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친생부·모의 성(性)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은 본인의 폐쇄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3. ③란: 본인의 폐쇄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정될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4. ④란: 본인의 폐쇄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희생자의 친생자 출생연월일 정정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본인의 정정될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5. ⑤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본인의 친생부·모의 본(本)을 기재합니다.
 -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과 관련하여 본인의 친생부·모의 본(本)을 기재합니다.
 - ‘희생자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과 관련하여 본인의 친생부·모 관계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친생부·모의 본(本)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⑥란: 본인의 출생장소를 기재합니다. 출생장소를 모를 경우에는 ‘미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7. ⑦란: 본인의 폐쇄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사실을 기재합니다.
8. ⑧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과 관련하여 본인의 친생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재합니다.
 - ‘희생자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과 관련하여 본인의 친생부·모 관계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생존여부”란에 친생부·모가 생존한 경우에는 ‘생존’으로 기재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기재합니다.
9. ⑨란: 본인의 폐쇄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을 기재합니다. “생존여부”란에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생존’으로 기재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기재합니다.
10. ⑩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본인의 폐쇄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기재하되, 자녀의 성(性)과 본(本)은 ②란과 ⑤란의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합니다. “생존여부”란에 자녀가 생존한 경우에는 ‘생존’으로 기재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기재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기재합니다.
11. ⑪란: 본인의 폐쇄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현재의 혼인관계사항을 기재합니다.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본인의 폐쇄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하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 결정 시 정정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합니다.
2. 본인의 종전의 성(姓)과 본(本)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 신청만으로는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위원회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되어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처리할 경우 본인과 그 직계비속은 성(性)과 본(本)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업무는 본인과 그 직계비속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4.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결정’과 관련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처리시 본인은 종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됨에 따른 후속업무는 본인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	
	1. 본인은 위 보증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 본인은 위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보증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희생자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	
1. 본인은 위 보증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 본인은 위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희생자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	
1. 본인은 위 보증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 본인은 위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보증사항을 소명하는 자료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날인 시) 1부	
담당공무원 공용발급	1. 보증인의 제적등본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 작성(정정)할 사항을 목격한 사람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단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됨)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항에 대하여 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이 포함될 경우 2명,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명이 보증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는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증사항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기재합니다.
- 서명 시에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날인 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보증인 서명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며, 인감도장 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유의사항

- 위원회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증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보증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대면 또는 통화)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허위의 보증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 결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에 대한 의견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전화번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와의 관계 작성(정정)대상자의 ()				
의견제출내용	신청 사항	☐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 ☐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희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희생자와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작성 (정정)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본적)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공부상 () / 실제 ()			
의견					

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신청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의견제출내용을 소명하는 자료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날인 시) 1부 3.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공용발급 및 확인사항	1. 의견제출인의 제적등본 2.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작성방법

1. 의견제출내용은 작성(정정)할 사항과 관련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실제 신분관계 및 제주4·3사건 당시 생활실태 등을 육원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의견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기재합니다.
2. 서명 시에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날인 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서명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며, 인감도장 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의견제출서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시 대리 제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위원회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공고기간이 도과되기 전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공고기간 만료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4. 의견제출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의견제출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대면 또는 통화)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인이 허위의 의견제출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 결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청 사유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후유장애 희생자		후유장애 부위 및 내용		
	[] 수형인 희생자	구속일	출소일	구금(수용)기관	
		집행유예 기간 또는 벌금액 등 선고 내용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해당 없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	[] 해당 [] 해당 없음				
	수령금액			수령일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다. 희생자의 후유장애에 대해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추가 진단서(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진단서에 따른 후유장애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애가 추가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진단서로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다. 수형인 희생자의 수형 사실과 관련된 추가 증명자료(수형·구금 사실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에 관하여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빙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로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상금이 차감 지급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잘못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어 유족이나 상속인이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나중에 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확인되면 잘못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 란에는 희생자가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의 해당 사항을 적고, 상속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부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2. “희생자” 란에는 희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등록기준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생년월일과 당시 주소를 작성합니다.
3. “신청 사유” 란에는 희생자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국가유공자” 란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인 경우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 란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인 경우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목록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행방불명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최후주소			
	등록기준지(본적)			
	실종 당시상황	발생일시	당시 나이	당시 직업
		주요 내용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전화번호	
	본인은 행방불명 희생자가 실종선고 청구대상자로 결정되고 관할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희생자의 행방불명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3.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공용발급 및 확인사항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신청인이 첨부) 3. 행방불명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4.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작성방법

1.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각 란의 해당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 월일을 기재합니다.
2. 행방불명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없는 경우에는 “실종 당시 상황란”에 희생자의 제적부가 없는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1. 제주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중 제적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2. ‘제적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인이 허위의 신청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과 다르게 실종선고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생략) <신설>	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집중적 으로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보 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제8조(운영세칙) ----- ----- 분과위원 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소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법 제12 조, 제20조, 제21조의2 및 제21 조의3에 따른 신청사실의 통지, 공고 및 사실조사의 절차와 방 법 등 사무처리---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에 대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 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 록 또는 정정결정의 범위 및 신 청기간) ① 법 제12조제2항, 제2 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위 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록 또는 정정(이하 “작성(정 정)”이라 한다) 결정범위는 별 표 1과 같다.

에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희생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

적등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나. 희생자 결정통지서

다.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는 해당 유족의 가족관계

증명서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유족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유족 본인의 가족관계증

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

등본

나. 희생자의 가족관계증명

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

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서)

다. 유족 결정통지서

라. 희생자 결정통지서

마. 신청인이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인 유족이 아닌 유

족인 경우에는 그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희생자·유족
외의 사람인 경우: 다음 각 목
의 서류

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
는 정정 대상자 본인의 가
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나. 희생자 결정통지서(본인
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만 제출한다)

다. 본인과 희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
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
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
이 있는 경우 그 보완·수정
요청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작성(정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호주가 직계비속납자 없이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행방불명되어 1991년
1월 1일 이전에 그 배우자(사

2. 사실조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청 사실의 통지 및 의견 접수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속 또는 친족회가 양자로 선정한 사람

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 또는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을 하지 않고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동친(同親: 촌수가 같은 사람)의 직계비속남자가 혼인 이후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1991년 1월 1일 이전에 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속 또는 친족회가 양자로 선정한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85조를 준용한다.

<삭 제>

③ 법 제12조제2항, 제21조의2 제3항 및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1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무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2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신 설>

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의2(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록 또는 정정결정에 대한 신청) ① 법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 제13조의3 및 별표 2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소명하는 자료로서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이 포함된 경우에는 2명,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제적등본 및 인감증명서 또

<신 설>

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1. 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

2. 제주4·3사건 및 그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
할 사항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제주4·3사건 및 그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
할 사항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하
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제13조의3(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록 또는 정정결정 신청에 대
한 사실조사 등) ① 실무위원회
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
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
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
치를 해야 한다.

1.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
결이 있는 경우 그 보완·수

정 요청

2. 사실조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청 사실의 통지 및 2개월 간의 공고

② 법 제21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3호, 제3항 및 제6항의 이해관계인이란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가 변동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성(姓)·본(本)이 변경되는 사람

2.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록 또는 정정되는 사람

3.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변동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③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제1항제3호의 공고기간 내에 실무위원회에 별지 제7호의5서식

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인의 제적등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

제13조의2(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말한다.

제13조의3(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한다.

제13조의4(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

----- 별표 3 -----

-----.

제13조의5(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① -----

별지 제8호서식 -----

-----.

1. -----

가. (생 략) <u>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u> <u>으로 결정받은 통지서</u> 다. (생 략) 2.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 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u>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u> <u>으로 결정받은 통지서(유</u> <u>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u> <u>제출한다)</u> 다.·라. (생 략) 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u>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u> <u>으로 결정받은 통지서(유</u> <u>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u> <u>제출한다)</u> 다.·라. (생 략) ② ~ ④ (생 략) <u>제13조의4(보상금 신청기간의 공</u>	가. (현행과 같음) <u><삭 제></u> 나. (현행 다목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u><삭 제></u> 나.·다. (현행 다목 및 라목 과 같음) 3. ----- ----- ----- 가. (현행과 같음) <u><삭 제></u> 나.·다. (현행 다목 및 라목 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u>
---	---

고)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
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
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생략)

제14조(재심의)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
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
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
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
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
출해야 한다.

1. (생략)

2.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3. 4. (생략)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
청) <신설>

고) ① -----

----- 2026년 12월 31일-----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재심의) ① -----

-- 별지 제11호서식-----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별지 제9호서식-----

-----.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10호서식-----

3. 4. (현행과 같음)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
청)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행방불명 희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말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

유족은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별지 제12호서식-----

실무위원회에 -----.

1.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및 ----- 초본

2.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3.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4. 희생자의 행방불명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실무위원회-----

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추후 일정과 절차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할 때 추가로 입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

-----.

④ 제2항-----
실무위원회-----

----- 위원회는 신청인에
게 보완-----.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67